

## 지방재정관련 판례

### 1. 대법원 2002.12.10. 선고 2002두7609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

- 행정재산인 도로는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침범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유인 을지로 4가 310-33과 서울특별시 소유인 을지로 4가 310-34는 모두 행정재산인 도로임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침범한 도로는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7. 11. 선고 2001누197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 중구 을지로 4가 310-6, 7 양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6층 건물 1동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위 건물은 서울특별시 중구 소유인 을지로 4가 310-33 도로 1.7m<sup>2</sup> 중

1.3m<sup>2</sup>와 서울특별시 소유인 을지로 4가 310-34 도로 14.5m<sup>2</sup> 중 3.9m<sup>2</sup>를 침범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01. 2. 9. 지방재정법 제87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위 침범을 이유로 한 2000. 1. 1.부터 2000. 12. 31.까지 기간에 대한 변상금으로 2,295,000원을 부과한 사실을 알 수 있다.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시점이 서울특별시가 도로로 편입할 부분을 분필한 직후 도로건설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이었고, 그 침범면적 이 5.2m<sup>2</sup>로 원고 소유 토지 102.4m<sup>2</sup>의 5% 정도에 불과하여 그 침범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선다고 볼 수 없고, 그 침범형태도 분필되어 나간 토지와 평행되게 약간씩 침범한 점, 서울특별시나 피고 역시 도로건설사업을 마친 후 최근까지 위와 같은 침범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새로 분필되어 나간 토지의 경계선에 맞추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시공상의 착오로 인접 토지를 약간 침범하게 되었고 최근까지도 이러한 침범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볼이 상당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인정되므로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1969. 10. 1.로부터 20년이 경과된 1989. 10. 1.경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후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중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1989. 10.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할 것

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침범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유인 을지로 4가 310-33과 서울특별시 소유인 을지로 4가 310-34는 모두 행정재산인 도로임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침범한 도로는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도로인 위 각 침범부분에 대한 원고의 시효취득 주장이 이유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말았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행정재산에 대한 시효취득 제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새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 대법원 2002.10.25. 선고 2000다2241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금전으로 미리 지급된 차액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그 반환의 범위

### 【판결요지】

차액보증금은 최저가낙찰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나친 저가입찰을 억제하여 덤펑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계약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급인이 계약 당시 약정에 따라 도급인에게 차액보증금을 금전으로 미리 지급하였다면 그 지급된 차액보증금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도급인의 소유로 귀속되었다가 수급인의 계약이행 등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도급인이 그 금액을 수급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그 반환 의무의 범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정해지되,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그 원금만 반환하면 되는 것이며, 차액보증금이 수급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 도급인에게 지급된 차액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 등의 과실이 당연히 수급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건설주식  
회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3. 30. 선  
고 99나367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을 폐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의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  
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상고이유  
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에 대하여

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차

액보증금에 관하여 정부보관금취급규칙이  
준용되고, 정부보관금취급규칙의 준용으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  
건 차액보증금을 연 2%의 이자가 지급되  
는 별단예금(기업자유예금)으로 예탁하였다  
가 원고에게 차액보증금을 반환할 때 그  
예탁으로 받은 연 2%의 이자를 함께 반환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심리미  
진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안한다.

나. 그러나 원심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액보증금에 대한 연 2%를 초과하  
는 정기예금이자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  
다고 판단한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

차액보증금은 최저가낙찰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나친 저가입찰을 억제하여 덤핑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계약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급인이 계약 당시 약정에 따라 도급인에게 차액보증금을 금전으로 미리 지급하였다면 그 지급된 차액보증금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도급인의 소유로 귀속되었다가 수급인의 계약이행 등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도급인이 그 금액을 수급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그 반환 의무의 범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정해지되,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그 원금만 반환하면 되는 것이며, 차액보증금이 수급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 도급인에게 지급된 차액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 등의 과실이 당연히 수급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차액보증금을 이자율 연 2%의 별단예금(기업자유예금)으로 예탁하였다가 이 사건 차액보증금을 반환할 때 그 예탁으로 받은 연 2%의 이자도 함께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액보증금의 반환과 함께 그에 대한 연 2%의 이자 상당을 반환하면 되고, 설사 피고가 이 사건 차액보증금을 원고와의 약정과는 달리 그 후 임의로 특정금전신탁으로 예탁하여 그보다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약정에 의한 연 2%의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

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승낙 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차액보증금을 약정보다 이율이 더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여 얻은 이익을 그 차액보증금 반환시에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회 정의관념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고, 피고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차액보증금을 특정금전신탁으로 예탁한 결과 원고가 예상하지 못한 높은 이율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은 피고가 타인의 사무를 자기의 사무인 줄 알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사무로서 관리한 경우 이지만,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와 같은 결과가 생긴 것이므로, 사무관리에 관한 민법 제738조와 위임에 관한 제684조 제1항을 준용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액보증금을 특정금전신탁으로 예탁하여 얻은 배당이익 중 통상 예상할 수 있었던 2년 이상 3년 이하의 정기예금이자 상당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여기에는 차액보증금과 그 반환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다투는 부분은 이유 있다.

##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차액보증금을 특정금전신탁으로 예탁하여 원고와의 약정에 의한 연 2%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원고와의 약정에 의한 연 2%의 이자 상당을 반환하면 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차액보증금을 특정금전신탁으로 예탁하여 피고가 얻은 이익 중 정기 예금이자를 넘는 부분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 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3. 대법원 2002.11.22. 선고 2002다35966 판결 [부당이득금]

- 지방재정법(1988. 4. 6. 법률 제4006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69조 제2항에서 사법상의 채권, 채무에 대하여도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해석한다 하여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지방재정법(1988. 4. 6. 법률 제4006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69조 제2항은 그 목적이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사법상의 채권, 채무에 대하여도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해석한다 하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거나 사인의 재산권을 합리적 이유없이 지나치게 제한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김○○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보조참가인】 박○○외 6

#### 【이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  
남구청장

####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5. 24. 선  
고 2001나10306 판결

지방재정법(1988. 4. 6. 법률 제4006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69조 제2항은 그 목적이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채무관계를 조기에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확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사법상의 채권, 채무에 대하여도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해석한다 하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거나 사인의 재산권을 합리적 이유없이 지나치게 제한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부분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헌법위반이나 지방재정법 제69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2.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와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 4.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3235 판결[과징금부과처분취소]

○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의 적용 기준

### 【판결요지】

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 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헌법 제13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전라남도지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01. 3. 15. 선

고 2000누12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이 유】

1. 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 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헌법 제13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1 판결, 1983. 12. 13. 선고 83누383 판결 등 참조).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 제3호, 제51조 제1항, 건설업법시행령(1994. 8. 23. 대통령령 제14366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별표 6] 나항 제3호는 위반한 공사의 하도급금액에 따라 5천만원까지 12%, 1억원 9%, 5억원 6%, 30억원 이상 3%의 각 과징금의 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전문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82조 제2항 제2호, 제84조, 구법시행령(1997. 7. 10. 대통령령 제15433호로 개정된 것) 제80조 제1항 [별표 6] 나항 제2호는 과징금의 비율을 2배 인상하여 위반한 공사의 하도급금액에 따라 5천만원까지

24%, 1억원 18%, 5억원 12%, 30억원 이상은 6%의 각 과징금의 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고, 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신법'이라 한다)은 제82조 제2항에서 과징금의 상한을 종전의 '위반한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에서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감경하기는 하였으나 신법 제84조, 신법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12호로 개정된 것) 제80조 제1항 [별표 6] 나항 제4호는 각 과징금의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한편 구법은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지만, 신법 부칙 제5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구법시행령과 신법시행령 그 자체에는 별다른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행정처분에 관한 구법과 신법의 제81조 내지 제83조를 대조하여 보면, 구법이 신법으로 개정되면서 구법 제81조에서 규정하던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는 8 가지 사유 중 2가지가 삭제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법 제82조 제2항에서 정하는 법 위반시의 과징금 부과상한이 50%에서 30%로 감경되었으며, 구법 제83조에서 규정하던 면허취소 등을 할 수 있는 10가지 사유 중 3가지가 삭제되는 등으로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13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신법 부

칙 제5조 제1항은 이와 같이 유리하게 개정된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경우 신법의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밝힌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을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렇게 본다면, 건설업법 시행 당시에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행위에 대하여 신법 시행 당시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의 부과상 한은 신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피적용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신법 제82조 제2항에 따르되, 구체적인 부과기준에 대하여는 처분시의 시행령이 행위시의 시행령 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어 유지되었지만 어느 시행령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행위시의 시행령에 따라야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가 건설업법 시행 당시에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원고의 그 판시 제1항 가.(2),(4) 행위에 관하여 1999. 12. 27. 처분 당시의 법령인 신법 제82조 제2항 제2호, 제84조, 신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 나항 제4호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행위시의 시행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불리한 처분시의 시행령을 적용하였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행정법 영역에서의 재산권 제한에 대한 소급효금지원

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그 주장의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오인한 위법이 없다.

2. 건설업법 제51조 제1항과 신법 제84조 등 수권규정의 형식과 내용, 그에 따른 건설업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신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업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별표 6]이나 신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의 각 규정은 일반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에 해당하고,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한 재량준칙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반대의 전제에 서서 피고가 신법과 신법시행령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소급효금지원칙에 저촉되지 않고 단지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45505 판결 [손해배상(기)등]

### ○ 지방재정법 제69조 소멸시효의 의미

#### 【판결요지】

지방재정법 제69조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규정은 다른 법률에 5년의 소멸시효기간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는 것일 뿐 다른 법률에 위 5년보다 긴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을 때에도 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는 취지는 아니다.

【원고, 상고인】 서○○등 59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02. 6. 28. 선  
고 2000나1357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  
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특정된 아파트의 공유대지면적보다 실제로 이전등기된 공유대지면적이 적음을 이유로 원고들 중 최초로 분양받은 일부 원고들이 분양자인 피고 부산광역시(이하 '피고시'라 한다)에 대하여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지방재정법 제69조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표시'란이 등기된 1990. 12. 29. 피고시의 위 원고들에 대한 아파트공유대지이전의무가 이행불능되었고, 그 후로서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 원고들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보더라도 위 법상의 5년의 기간이 이미 경과된 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부분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또한 위 원고들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때에 원고들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 때로부터 민법상 불법행위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의 기간이 이미 경과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들 중 최초로 분양받은 자로부터 아파트를 양도받아 소유하고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위와 같은 이유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그들이 등기된 내용대로 그 아파트를 매수하였다고 보일 뿐 달리 위 대지지분의 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금원지급 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위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고,

또한 피고시가 1, 2차 단지 아파트 건설시 완공된 관리동 건물 중 변전실 및 관리실을 1, 2차 단지 입주자들에게 독점적으로 분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관리동 일부에 관한 토지 지분을 1, 2차 단지 입주자들에게 이전등기하여 주지 아니하고 3차 단지 입주자들에게 이전등기함으로써 손해를 입혔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시가 위 관리동 건물 중 변전실 및 관리실을 1, 2차 단지 입주자들에게 독점적으로 분양하고도 다시 3차 단지 입주자들에게 이중으로 분양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위 관리동은 1, 2차 단지 입주자들과 3차 단지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려고 건립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시가 아파트내 87저수조의 고장을 막을 의도로 88저수조와 87저수조 사이 배수관에 말뚝을 박아놓고 6년 가까이 은폐·방치함으로써 입주자들로 하여금 88저수조의 수압을 이용하지 못하고 동력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의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 고장이 발생한 시기 또는 말뚝을 설치한 행위주체 등을 인정할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위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위 지방재정법 규정은 다른 법률에 5년의 소멸시효기간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는 것일 뿐 다른 법률에 위 5년보다 긴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을 때에도 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는 취지는 아니므로(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다586 판결 참조),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소멸시효기간 또는 이행불능 및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사안 및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